테마 1	개념체계	감정평가사 회계학

▶ 각 측정기준의 거래원가 포함 여부 및 현재가치 측정 여부

측정기준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가 생길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결제(이행)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	현재가치 측정 여부
역사적 원가	**O(반영)** 자산에는 가산, 부채에는 차감	**×(반영하지 않음)**	상각후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
공정가치	**×(반영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음)**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 사용시 현재가치 측정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반영하지 않음)**	O(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 반영)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되므로 현재가치측정
현행원가	**O(반영)** 자산에는 가산, 부채에는 차감	**×(반영하지 않음)**	해당 없음

▶ 측정기준과 정보의 유용성

측정기준	예측가치	확인가치	수탁책임 평가
역사적 원가	O	O	O
공정가치	O	O	O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O	O	-
현행원가	O	-	-

▶ 재무자본유지

①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익 발생
②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 가능
③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④ 명목화폐자본으로 이익 측정 시 보유자산의 가격 증가, 즉 보유이익도 개념적으로 이익에 포함.
⑤ 불변구매력 단위로 측정할 경우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부분만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이외의 가격 증가부분은 자본유지조정(자본)으로 처리

▶ 실물자본유지

①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 발생**(단, 여기서 기초실물생산능력이란 기초자본으로 실제 생산(구입)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구입)할 수 있었던 수량을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 ★**
③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자본)으로 처리

◆ 필수문제

1.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1

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②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③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⑤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 ㈜세무는 20×1년 초 ₩100,000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거래원가 ₩20,000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년 말 현재 동 토지와 동등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1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취득관련 거래원가 ₩5,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세무는 20×1년 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동 토지를 매도할 경우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할 수 있다. 20×1년 말 현재 토지의 역사적원가, 공정가치, 현행원가를 금액이 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CTA 23

①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공정가치
②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
③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④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⑤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3. ㈜한국은 20×1년 초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를 주당 ₩1,500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은 20×1년 초 상품 400개를 개당 ₩3,000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당기에 개당 ₩4,500에 모두 현금으로 판매하여, 20×1년 말 ㈜한국의 자산총계는 현금 ₩2,100,000이다. 20×1년 말 동 상품은 개당 ₩4,000에 구입할 수 있다. 실물자본유지개념하에서 ㈜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CTA 15

① ₩100,000 ② ₩250,000 ③ ₩350,000
④ ₩450,000 ⑤ ₩600,000

4. ㈜세무는 20×1년 초에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을 납입 받아 설립되었다. 회사는 20×1년 초에 상품 40단위를 단위당 ₩2,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단위당 ₩3,000에 모두 현금 판매하였다. 동 상품은 20×1년 말 단위당 ₩2,500에 구입가능하다. 20×1년 초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1년 말 물가지수는 12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CTA 24

	이익	자본유지조정
①	₩10,000	₩30,000
②	₩15,000	₩25,000
③	₩20,000	₩20,000
④	₩25,000	₩15,000
⑤	₩30,000	₩10,000

[개념체계]

<해답> 1.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답> 2. ②
1) 역사적원가 = ₩100,000(지급한 대가) + ₩20,000(거래원가) = ₩120,000
2) 공정가치 = ₩98,000 + ₩20,000 = ₩118,000(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음)
3) 현행원가 = ₩110,000 + ₩5,000 = ₩115,000

<해답> 3. ①
당기순이익 = ₩2,100,000 - (**500개** × ₩4,000) = ₩100,000

<해답> 4 ②
1) 실물자본유지개념하의 20×1년 이익 = ₩140,000(기말자본) - 50개 × ₩2,500 = ₩15,000
2) 자본유지조정 = 50단위 × (₩2,500 - ₩2,000) = ₩25,000

테마 2	재무제표 표시	감정평가사 회계학

▶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준수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봄 ②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2) 계속기업	①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 평가 ②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 공시
(3) 발생기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4) 통합과 세분화	① 개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의 항목을 식별해야 한다. 이후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에 공시할 때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합하고,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② 항목 중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을 별도표시항목이라 한다. ③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 : 여러항목 -> 단일항목 * 통합은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포함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합산하는 것이다.
(5) 상계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상계하지 아니한다. ②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 표시 (예 : 비유동자산 처분손익,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받는 금액,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중요하면 구분표시)**
(6) 보고빈도	①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 포함)는 적어도 1년 마다 작성 ② 보고기간 종료일의 변경으로 보고기간이 1년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그 이유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추가 공시
(7) 비교정보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 공시 ②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 포함** ③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
(8)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 ①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재무상태표**

최소한 표시항목 (예시 규정)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순서 및 유사 항목의 통합방법 변경 가능**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②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표시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가능(혼합표시) ③ 기업이 명확하게 식별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구분 표시 ④ 금융회사 등의 경우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
유동자산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음**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④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님
유동부채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 예상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차입금 등의 분류기준	①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 ② **보고기간 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단,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④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표시(선택)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별개)의 보고서
손익계산서 구분 : 범주별 당기손익	① 영업 범주 :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이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손익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비경상성이나 비반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두 영업 범주의 손익으로 분류(예 : 매출관련 거래, 재고관

	련 거래, 종업원 관련 거래, 관리활동 거래, 유·무형자산 거래, 사업결합 거래) ② 투자 범주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자산(예 : 투자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투자범주로 분류 ③ 재무 범주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예 : 차입금과 사채 등) 및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예 : 장기매입채무와 계약부채,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이자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 ④ 법인세 범주 :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그리고 관련 외환차이를 법인세 범주로 분류 ⑤ 중단영업 범주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 **⑥ 중간합계 구분표시 : 손익계산서에는 반드시 중간합계로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구분하여 표시** 1) 영업손익 : 매출수익 - 매출원가 + 기타영업수익 - 기타영업비용 2)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투자범주수익 - 투자범주비용 3) 당기순이익 :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재무범주수익 - 재무범주비용 - 법인세비용 ⑦ 손익계산서의 이익 표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특별손익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 불가**
비용의 분류	①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표시 가능 ② 성격별로 비용을 분류할 경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음 ③ 기능별 분류가 성격별 분류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능별 배분과정에 자의적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 개입 가능 **④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할 경우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 공시**
기타포괄손익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 여부에 따른 구분표시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재분류 금지)**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 FVOCI 선택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손익 - FVPL 지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손익 -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② 다음의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선택)** ㉠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 필수문제

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3

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시 적용한다.
③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21

①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④ 재분류조정은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후속 기간에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

[재무제표 표시]

<해답> 1. ①
②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④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도 허용한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답> 2. 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후속 기간에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테마 3	재고자산	감정평가사 회계학

▶ **단위원가 결정방법(원가흐름의 가정)**

개별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 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영역의 원가 결정에 사용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 중 선택, 후입선출법은 적용 불가 ②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 적용 ③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 적용이 정당화되지 않음**
원가흐름 가정의 당기순이익 효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저가법의 적용	① **항목별** 적용이 원칙 ②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 가능(조별 가능, 총계 불가)
평가손실 및 환입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① **매 후속시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 평가손실(환입) 인식 ②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환입
순실현가능가치	① **확정판매계약 순실현가능가치 :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추정** ②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 :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
원재료→제품	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감액하지 않음)** ②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현행대체원가)로 감액**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① 저가법 적용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②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 ③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

▶ **소매재고법**

(1) 기말재고(매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순인상 - 순인하 - 매출액 - 정상감모 - 종업원할인

(2) 원가율

- 평균원가율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순인상 - 순인하)
- 선입선출 원가율 = 당기매입 ÷ (당기매입 + 순인상 - 순인하)
- 저가주의 평균, 저가주의 선입선출은 위의 식에서 순인하를 차감하지 않음

※ 비정상감모손실은 원가, 매가에서 모두 차감하여 기말재고(매가), 원가율 모두 포함되지 않음

(3) 기말재고(원가) = 기말재고(매가) × 원가율

◆ 필수문제

1.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한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가중평균단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10.9은 ₩11)하여 계산한다. ▸CPA 26

일자	적요	수량	매입단가
20x1. 1. 1.	기초재고	100개	₩100
20x1. 2. 1.	매입	300개	₩120
20x1. 3. 2.	매출	200개	
20x1. 7. 1.	매입	200개	₩150
20x1. 9. 15.	매출	150개	
20x1. 12. 31.	기말재고	250개	

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②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4,250만큼 작다.
③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말재고자산이 ₩4,250만큼 작다.
④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⑤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2,950만큼 크다.

2. ㈜관세의 20x1년 기초재고자산 금액은 ₩40,000, 당기재고자산매입액은 ₩500,000이다. 20x1년 기말재고자산 실사결과, 재고수량이 350개(장부상 재고수량은 400개, 단위당 취득원가 ₩1,200)임을 확인하였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중 80%는 정상적인 감모로 인한 것이다.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단위당 ₩1,050이라면, ㈜관세의 20x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x1년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관세사 26

① 매출원가는 ₩172,500이다.
② 정상감모손실은 ₩48,000이다.
③ 비정상감모손실은 ₩12,000이다.
④ 재고자산평가손실은 ₩52,500이다.
⑤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367,500이다.

3.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저가기준으로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은? (단, 정상파손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파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CTA 23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80,000	₩100,000
총매입액	806,000	1,000,000
매입할인	50,000	-
총매출액	-	1,050,000
매출환입	-	24,000
순인상액	-	95,000
순인하액	-	50,000
정상파손	-	50,000
비정상파손	10,000	15,000

① ₩221,000 ② ₩227,800 ③ ₩237,800 ④ ₩245,000 ⑤ ₩261,800

4. ㈜세무는 20×1년 12월 31일 독립 사업부로 운영되는 A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장부가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공장의 매출처 및 매입처, 그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 매출 : ₩1,000,000
- 기초재고 : ₩100,000
- 20×1년 재무비율
  - 매출총이익률 : 15%
  - 재고자산회전율 : 680%

㈜세무가 추정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은? (단, 매출총이익률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매년 동일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한다.) ▸CTA 20

① ₩150,000 ② ₩150,500
③ ₩151,000 ④ ₩151,500
⑤ ₩152,000

[재고자산]

<해답> 1. ⑤

①②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이 동일하다.

③ 단위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중평균법에 비해 기말재고자산이 더 크다.

④ 단위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매출원가는 더 작다.

<해답> 2. ①

1)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 (400개 - 350개) x ₩1,200 = ₩60,000

2) 정상감모손실 = ₩60,000 x 80% = ₩48,000

3) 비정상감모손실 = ₩60,000 x 20% = ₩12,000

4) 재고자산평가손실 = 350개 x (₩1,200 - ₩1,050) = ₩52,500

5)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 = 350개 x min[₩1,200, ₩1,050] = ₩367,500

6) 매출원가 = ₩40,000(기초재고) + ₩500,000(당기매입액) - ₩367,500(기말재고) - ₩12,000(비정상감모손실) = ₩160,500

<해답> 3. ③

1) 기말재고(매가) = ₩100,000 + ₩1,000,000 - ₩15,000(비정상파손) + ₩95,000(순인상액) - ₩50,000(순인하액) - ₩1,026,000(순매출액) - ₩50,000(정상파손) = ₩54,000

2) 원가율(저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 = (₩80,000 + ₩806,000 - ₩50,000 - ₩10,000) ÷ (₩100,000 + ₩1,000,000 + ₩95,000(순인상액) - ₩15,000(비정상파손) = 70%

3) 기말재고(원가) = ₩54,000 × 70% = ₩37,800

4) 매출원가 = ₩80,000 + ₩756,000(순매입액) - ₩10,000(비정상파손) - ₩37,800(기말재고-원가) = ₩788,200

5) 매출총이익 = ₩1,026,000(순매출액) - ₩788,200(매출원가) = ₩237,800

<해답> 4. ①

1) 매출원가 = ₩1,000,000 × (1-15%) = ₩850,000

2) 평균재고자산 = ₩850,000(매출원가) ÷ 6.8회(재고자산회전율) = ₩125,000

3) 재고자산 손실금액 = ₩125,000(평균재고자산) × 2 - ₩100,000(기초재고) = ₩150,000

테마 4	유형자산	감정평가사 회계학

▶ **원가의 측정**

① **일괄취득시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
-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직후 건물 철거시 토지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하고,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
-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 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당기비용 처리

② **국공채 부수 취득**
- 일반적으로 국공채의 매입가액은 국공채의 공정가치(국공채의 미래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한 값) 보다 높음
- 국공채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취득부대비용이 되어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

③ 교환거래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현금수수액은 자산 취득원가에 가감 조정),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현금수수액은 자산 취득원가에 가감조정하지 않음). 단,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또는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④ **복구의무 있는 취득**
- 취득시점부터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 재고자산 취득과 관계 없는 경우 원상복구시점의 예상현금흐름을 현재가치한 값을 복구충당부채로 하여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
- 취득 이후 복구의무가 발생한 경우 : 복구충당부채 금액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전진적으로 인식
- 복구충당부채의 변경 : 복구예상금액이나 할인율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복구충당부채 및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조정

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즉, 현재가치)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

⑥ **정부보조금 취득 :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차감법 또는 이연수익법 중 선택 가능**
- 자산차감법 :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감가상각비 및 장부금액 계산
- 정부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정부보조금이 있음
(정부보조금 = 실제 차입한 금액 - 현금흐름을 조달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값)

▶ **감가상각의 개시, 중단, 종료**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유의적이라면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②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④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 감가상각액 인식**

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⑥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감가상각 중지

⑦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계속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

⑧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⑨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사용 가능.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

▶ 재평가모형의 적용

① 재평가모형의 **최초 적용시** 회계정책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적용연도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하여 **전진법 적용**

②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되, **재평가의 빈도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짐**

③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므로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단,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④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되, 동일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 인식

⑤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⑥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하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재평가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선택)**

▶ 손상(유형자산, 무형자산)

손상	①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 추정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검사**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회수가능액	①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② 순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 ③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한 가지만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없음

손상 회계	**① 원가모형 적용시**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 ㉡ 손상차손환입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인식 **② 재평가모형 적용시** ㉠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재평가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재평가액)보다 적기 때문에 당해 자산의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적다면 재평가된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봄 ㉡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 이 때 이미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과년도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만큼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액이 있다면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인식

◆ 필수문제

1. ㈜감평은 20X1년 1월 1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의 건물을 ₩80,000,000에 취득하면서 액면가액 ₩20,000,000의 국채를 부수 취득하였다. ㈜감평은 이 채권을 수취목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채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상환기한 : 발행 5년 후 일시상환
- 이자율 : 액면가액의 연 1%
- 시장이자율 : 연 8%

㈜감평이 20X1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투자채권의 이자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기간 5년, 8%의 연금현재가치계수는 3.99, ₩1의 현재가치계수는 0.68이다.)

2. (주)감평은 20×1년 초 환경설비(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환경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러한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주)감평은 취득시점에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적절한 할인율은 연 10%로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주)감평은 20×2년 초 환경설비의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이 ₩200,000에서 ₩30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할인율도 연 10%에서 연 12%로 수정하였다. (주)감평이 환경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환경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년 기출)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12%)
4	0.6830	0.6355
5	0.6209	0.5674

① ₩1,024,837 ② ₩1,037,254 ③ ₩1,038,350 ④ ₩1,047,716 ⑤ ₩1,061,227

3. ㈜감평은 20×1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변민원으로 20×1년 10월 초부터 3개월간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20×2년 초에 사용종료(4년 후)시 환경복구(지출 추정금액 ₩300,000,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 연 6%)를 조건으로 시설을 재가동하였다. 20×2년도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23년 기출)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 = 6%)
4	0.7921
5	0.7473

① ₩244,838 ② ₩247,526 ③ ₩259,408 ④ ₩268,548 ⑤ ₩271,908

4. ㈜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400,000에 구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금 ₩400,000을 무이자조건으로 전액 지원받았다.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5년이며 추정잔존가치는 없다. 정부로부터 수령한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4년이고, 자금차입을 현재 ㈜감평이 적용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구입한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기간별 8% 현재가치계수(현가)는 아래의 표를 이용한다.

기간	8%, 단일금액 ₩1의 현가	8%, 정상연금 ₩1의 현가
4년	0.7350	3.3121
5년	0.6806	3.9927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감평은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5. (주)감평은 20X1년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이자조건의 자금 ₩100,000을 차입(20X4년 말 전액 일시상환)하여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20X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주)감평이 20X1년 초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한다.) (20년 기출)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8%)
4	0.7350

① ₩48,500 ② ₩54,380 ③ ₩55,125 ④ ₩75,000 ⑤ ₩81,625

6.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장부금액 ₩1,000,000(공정가치 ₩900,000)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주)대한의 기계장치와의 공정가치 차이 ₩10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주)세무는 (주)대한과의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4년과 잔존가치 ₩0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평가)을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1년 말과 20×2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570,000과 ₩420,000이다. 위 거래가 (주)세무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며 감가상각비 중 자본화한 금액은 없다.) ▸CTA 22

① ₩130,000 감소 ② ₩160,000 감소 ③ ₩190,000 감소
④ ₩220,000 감소 ⑤ ₩250,000 감소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1

①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라면 상각방법과 관계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②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④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할 수 없다.

8. (주)감평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6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 20×1년 말 현재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은 ₩760,000이며 처분관련 부대원가는 ₩7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주)감평이 동 기계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20×2년 말부터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매년 말 ₩300,000의 순현금유입과,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20,000의 기계 철거 관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할 할인율은 연 12%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12%)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할인율=12%)
3	0.7118	2.4018

(주)감평이 20×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년 기출)

① ₩465,194 ② ₩470,000 ③ ₩479,460 ④ ₩493,696 ⑤ ₩510,000

9. ㈜대한은 건물(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은 20×1년 초에 본사 건물(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 하였으며, 내용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 ㈜대한은 20×1년 말 보유중인 건물에 대해서 손상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이를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 20×1년 말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은 ₩370,000, 처분부대원가는 ₩1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년 말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2년 말부터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매년 말 ₩80,000의 순현금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될 할인율은 연 8%이다.
· 20×2년 초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비용(수익적지출)과 관련하여 ₩20,000이 발생하였다.
· 20×2년 말 건물이 손상회복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회수가능액은 ₩450,000으로 추정되고 있다.

할인율	8%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년	0.7350	3.3121
5년	0.6806	3.9927

㈜대한의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PA 20

① ₩20,000 증가 ② ₩40,000 증가 ③ ₩80,000 증가
④ ₩92,000 증가 ⑤ ₩100,000 증가

10. (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CTA 23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

① ₩400,000 감소 ② ₩600,000 감소 ③ ₩900,000 감소
④ ₩1,100,000 감소 ⑤ ₩1,300,000 감소

11.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5년 기출)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250,000	₩210,000
회수가능액	260,000	150,000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60,000 ⑤ ₩70,000

[유형자산]

<해답> 1. 감가상각비 = ₩8,560,200, 이자수익 = ₩1,151,840

1) 투자채권의 20X1년 1월 1일 공정가치 = ₩20,000,000 X 0.68 + ₩200,000 X 3.99 = ₩14,398,000

20X1.1.1	(차) 건물	85,602,000	(대) 현 금	100,000,000
	AC금융자산	14,398,000		

2) 20X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20X1.12.31	(차) 감가상각비	8,560,2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560,200
	(차) 현금	200,000	(대) 이자수익	1,151,840
	AC금융자산	951,840		

① 20X1년 감가상각비 = ₩85,602,000 X 1/10 = ₩8,560,200

② 20X1년 이자수익 = ₩14,398,000 X 8% = ₩1,151,840

<해답> 2. ⑤

1) 20×1년도 환경설비 취득원가 = ₩5,000,000 + ₩124,180(복구충당부채) = ₩5,124,180

* 20×1년 초 복구충당부채 = ₩200,000 X 0.6209(5기간, 10%, 현가) = ₩124,180

2) 20×1년 말 환경설비 장부금액 = ₩5,124,180 - (₩5,124,180 X 1/5) = ₩4,099,344

3)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124,180 + ₩12,418 = ₩136,598

4) 20×2년 초 새로 추정된 복구충당부채 = ₩300,000 X 0.6355(4기간, 12%, 현가) = ₩190,650

5) 복구충당부채 증가금액 = ₩190,650 - ₩136,598 = ₩54,052

-> 관련 의무가 증가하였으므로 환경설비 장부금액에 ₩54,052를 증가시킨다.

6) 20×2년도 총비용

- 감가상각비 = (₩4,099,344 + ₩54,052) X 1/4 = ₩1,038,349
-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 ₩190,650 X 12% = ₩22,878
- 20×2년도 총비용 = ₩1,038,349 + ₩22,878 = ₩1,061,227

<해답> 3. ③

1) 20X1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1,000,000 - ₩0) X 1/5] = ₩800,000

2) 20X2년 초 복구충당부채 = ₩300,000 X 0.7921 = ₩237,630

3) 20X2년 감가상각비 = (₩800,000 + ₩237,630 - ₩0) X 1/4 = ₩259,408

<해답> 4. 감가상각비 = ₩80,000 - ₩21,200 = ₩58,800

1)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 = ₩400,000 X 0.7350(4년, 8%, 현가) = ₩294,000

20X1.1.1	(차) 현 금	400,000	(대) 장기차입금	294,000
			정부보조금	106,000
	(차) 기계장치	400,000	(대) 현 금	400,000

20X1.12.31	(차) 감가상각비	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
	(차) 정부보조금	21,200	(대) 감가상각비	21,200
	(차) 이자비용	23,520	(대) 장기차입금	23,520

① 감가상각비 = ₩400,000 X 1/5 = ₩80,000

②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 = ₩106,000 X (₩80,000/₩400,000) = ₩21,200

③ 20X1년 이자비용 = ₩294,000 X 8% = ₩23,520

<해답> 5. ③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공정가치 = ₩100,000 X 0.7350 = ₩73,50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00을 차입하였으므로 공정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이 정부보조금이 된다. 정부보조금은 ₩26,500이다.

2) 20×1년 말 장부금액

= ₩73,500(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액) - [(₩73,500 - ₩0) X 1/4] = ₩55,125

<해답> 6. ②

1) 20X1년 초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 = ₩900,000(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 - ₩100,000(현금수령액) = ₩800,000

2) 재평가회계처리

20X1년 말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대) 기계장치	230,000
	재평가손실	30,000		
20X2년 말	(차) 감가상각비	19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9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90,000	(대) 기계장치	150,000
			재평가이익	30,000
			재평가잉여금	10,000

->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90,000) + ₩30,000(재평가이익) = ₩160,000 감소

<해답> 7. ④

①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②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③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해답> 8. ④

1) 20×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1,600,000 - (₩1,600,000 X 1/4) = ₩1,200,000

2)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690,000), 사용가치(₩706,304)] = ₩706,304

* 사용가치는 계속사용에 따른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 20×1년 말 사용가치 = ₩300,000 X 2.4018 - ₩20,000(철거비) X 0.7118 = ₩706,304

3) 20×1년 손상차손 = ₩1,200,000 - ₩706,304 = ₩493,696

<해답> 9. ①

1) 20X1년도 말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360,000

- 순공정가치 = ₩370,000 - ₩10,000 = ₩360,000
- 사용가치 = ₩80,000 X 3.9927(5기간, 8%, 연금현가계수) = ₩319,416

2) 20X2년도 감가상각비 = (₩360,000 - ₩0) X 1/5 = ₩72,000

3) 손상차손 환입 = ₩400,000(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288,000 = ₩112,000

4)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72,000) + (₩20,000) + ₩112,000 = ₩20,000 증가

※ 수익적지출은 발생한 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해답> 10. ④

20×1년 말	(차) 감가상각비	6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대) 차량운반구		400,000
			재평가잉여금		200,000
20×2년 말	(차) 감가상각비	7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7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700,000	(대) 차량운반구		1,100,000
	재평가잉여금	200,000			
	재평가손실	200,000			
	(차) 손상차손	2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

->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700,000) + (₩200,000) + (₩200,000) = ₩1,100,000 감소

<해답> 11. ④

20X1년 말	(차) 토지	50,000	(대) 재평가잉여금	50,000
20X2년 말	(차) 재평가잉여금	40,000	(대) 토지	40,000
	(차) 재평가잉여금	1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60,000
	손상차손	50,000		

테마 5	차입원가 자본화	감정평가사 회계학

1. ㈜감평은 20×1년 5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사대금 지출 및 신축공사와 관련되는 차입금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5.1	20×1.11.1	20×2.1.1	20×2.7.1
공사대금지출액	₩800,000	₩400,000	₩500,000	₩400,000

차입금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연이자율
특정차입금A	₩700,000	20×1.5.1 ~ 20×2.12.31	6%
일반차입금B	300,000	20×1.5.1 ~ 20×2.7.31	9%
일반차입금C	400,000	20×1.10.1 ~ 20×2.4.30	12%

한편, ㈜감평은 특정차입금A ₩700,000 중 ₩100,000을 20X1년에 5개월 간 연 3%의 투자수익률로 일시 투자하였다.

[물음]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하시오. 단,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 등은 월할계산한다.

2. ㈜감평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의 제작을 개시하였으며, 동 기계장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기계장치의 제작은 20×2년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감평은 기계장치의 제작을 위해 20×1년 초에 ₩60,000과 20×1년 7월 1일에 ₩4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감평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이자지급조건
A	20X1.1.1	₩40,000	20X1.12.31	8%	단리/매년 말 지급
B	20X1.1.1	10,000	20X1.12.31	12%	단리/매년 말 지급
C	20X1.7.1	30,000	20X2.6.30	10%	단리/매년 말 지급

상기 차입금 중에서 차입금A는 기계장치의 제작을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이다. 차입금B와 차입금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한편 ㈜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10,000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기계장치의 제작에 사용하였다. 제작중인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20X1년과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정부보조금은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한다.)

3.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24년 기출)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일 자	금 액
20×1. 5. 1.	₩240,000
20×1. 9. 1.	108,000
20×2. 6. 1.	180,000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여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구 분	차입금액	차입기간	연 이자율
차입금 A	₩100,000	20×0. 1. 1.～20×2. 12. 31.	12%
차입금 B	200,000	20×1. 7. 1.～20×2. 06. 30.	10%

① ₩17,600 ② ₩18,860 ③ ₩19,440 ④ ₩21,560 ⑤ ₩22,000

4. ㈜대한은 20×1년 3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3.1.	20×1.10.1.	20×2.1.1.	20×2.9.1.
공사대금 지출액	₩300,000	₩400,000	₩300,000	₩1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A	₩240,000	20×1. 3.1.～20×2. 9.30.	6%(단리)
일반차입금B	₩240,000	20×1. 3.1.～20×2. 6.30.	6%(단리)
일반차입금C	₩60,000	20×1. 6.1.～20×2.12.31.	9%(단리)

20×1년 3월 1일의 지출액에는 공장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차입금A 중 ₩100,000은 20×1년 4월 1일부터 20x1년 9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3%(단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이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연평균 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차입금과 정기예금은 매월 말 이자 지급(수취) 조건이다. ▸CPA 23

① ₩16,450 ② ₩21,900 ③ ₩23,400 ④ ₩42,700 ⑤ ₩53,200

[차입원가 자본화]

<해답> 1. 20X1년 자본화차입원가

① 특정목적차입금 = ₩700,000 X 6% X 8/12 - (₩100,000 X 3% X 5/12) = ₩26,750

②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 평균지출액 = ₩800,000 X 8/12 + ₩400,000 X 2/12 = ₩600,000
- 특정목적차입금 평균 = ₩700,000 X 8/12 - ₩100,000 X 5/12 = ₩425,000
-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300,000 X 9% X 8/12 + ₩400,000 X 12% X 3/12 = ₩30,000
- 일반목적차입금 평균 = ₩300,000 X 8/12 + ₩400,000 X 3/12 = ₩300,000
-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30,000 ÷ ₩300,000 = 10%
-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600,000 - ₩425,000) X 10% = ₩17,500(한도:₩30,000)

-> 20X1년도 자본화차입원가 = ₩26,750 + ₩17,500 = ₩44,250

<해답> 2. 20X1년 자본화차입원가

①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40,000 X 8% X 12/12 = ₩3,200

② 적격자산 평균지출액 = (₩60,000 - ₩10,000) X 12/12 + ₩40,000 X 6/12 = ₩70,000
일반목적차입금의 당기발생 이자비용 = ₩10,000 X 12% X 12/12 + ₩30,000 X 10% X 6/12 = ₩2,700
일반목적차입금 평균 = ₩10,000 X 12/12 + ₩30,000 X 6/12 = ₩25,000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2,700 ÷ ₩25,000 = 10.8%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70,000 - ₩40,000) X 10.8% = ₩3,240(한도 : ₩2,700)

③ 20X1년도 자본화차입원가 = ₩3,200 + ₩2,700 = ₩5,900

2. 20X2년도 자본화차입원가

①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없음

② 적격자산 평균지출액 = (₩100,000 - ₩10,000) X 12/12 = ₩90,000
일반목적차입금의 당기발생 이자비용 = ₩30,000 X 10% X 6/12 = ₩1,500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90,000 - ₩0) X 10% = ₩9,000(한도 : ₩1,500)

③ 20X2년도 자본화차입원가 = ₩1,500

<해답> 3. ①

1) 20X1년 연평균지출액 = ₩240,000 X 8/12 + (₩108,000 - ₩108,000) X 4/12 = ₩160,000
2) 20X1년 자본화이자율 = (₩12,000 + ₩10,000) ÷ (₩100,000 X 12/12 + ₩200,000 X 6/12) = 11%
3) 20X1년 자본화금액 = ₩160,000(연평균지출액) X 11% = ₩17,600(한도 : ₩22,000)

<해답> 4. ③

1) 20X2년 연평균지출액 = (₩700,000 - ₩200,000) × 9/12 + ₩300,000 × 9/12 + ₩120,000 X 1/12 = ₩610,000
2) 20×2년 특정차입금 자본화금액 = ₩240,000 × 6% × 9/12 = ₩10,800
3) 20×2년 자본화이자율 = (₩7,200 + ₩5,400) ÷ (₩240,000 × 6/12 + ₩60,000 × 12/12) = 7%
4) 20×2년 일반차입금 자본화금액 = [₩610,000 - (₩240,000 × 9/12)] × 7% = ₩30,100(한도 : ₩12,600)
5) 20×2년 자본화금액 = ₩10,800(특정차입금) + ₩12,600(일반차입금) = ₩23,400

테마 6	영업권 추가고려사항	감정평가사 회계학

▶ **사업결합기준서**

이전대가	① 이전대가 :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 ②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한다.
조건부대가	① 조건부대가란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의 일부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를 말한다. ② 조건부대가도 이전대가에 포함된다. 조건부대가 : 취득일의 공정가치
우발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예외를 허용한다.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한 브랜드명, 특허권 또는 고객관계 등을 취득자가 사업결합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취득 관련 원가	① 중개수수료(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 비용으로 인식 ② 내부의 사업결합 담당부서 유지에 소요되는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 비용 ③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발행원가 : 당해 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

◆ 필수문제

1. (주)감평은 20×1년 초에 (주)한국의 발행주식 10%를 ₩50,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0이며, 20×2년 초 공정가치는 ₩62,000이다. 20×2년 초 (주)감평은 ㈜한국의 나머지 주식 90%를 추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감평 주식(주당 공정가치 ₩1,000, 주당액면금액 ₩500) 900주를 교부하여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향후 (주)한국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합병당시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금액은 ₩600,000이며, 공정가치는 ₩800,000이다. 합병일 현재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20,000이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또한 합병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6,000이다. 합병일에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26년 기출)

① ₩160,000 ② ₩154,000 ③ ₩152,000 ④ ₩140,000 ⑤ ₩120,000

<해답> 1. ①

1) 이전대가 = ₩62,000(단계별 취득에 따라 이미 취득한 fvpl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900주 x ₩1,000 + ₩12,000(조건부대가) = ₩974,000

2) 피취득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 ₩800,000 + ₩20,000(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 ₩6,000(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인식) = ₩814,000

3) 영업권 = ₩974,000(이전대가) - ₩814,000(피취득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 = ₩160,000

테마 7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감정평가사 회계학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①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 적용
②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음
③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 완료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을 원가로 측정
④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였는데 예외적으로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워 하나의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그 밖의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적용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① 원가모형 적용 투자부동산 대체는 장부금액을 승계하므로 차손익 발생 ×
②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의 계정대체
  ㉠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또는 재고자산 :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자가사용부동산 또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간주
  ㉡ 자가사용부동산(감가상각 및 발생한 손상인식) →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재평가회계와 동일하게 처리
  ㉢ 재고자산 →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건설·개발완료 건설중인 자산 →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필수문제

1. ㈜감평(결산일 12월 31일)은 20X1년 7월 1일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감평은 20X2년 7월 1일에 동 건물을 공장건물로 사용하기로 목적을 변경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일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12.31	20X2.7.1	20X2.12.31
₩1,100,000	₩1,050,000	₩1,010,000

[물음]
① 20X2년 7월 1일 건물의 사용목적 변경 시 ㈜감평이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② 20X2년 7월 1일 현재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20X2년 말에 ㈜감평이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시오.

2. ㈜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을 20×3년 7월 1일에 ㈜민국에게 운용리스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대한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2년 말	20×3년 7월 1일	20×3년 말
₩2,000,000	₩2,500,000	₩3,000,000

㈜대한의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CPA 23

① ₩45,000 감소　② ₩455,000 증가　③ ₩500,000 증가
④ ₩600,000 증가　⑤ ₩1,180,000 증가

[차입원가 자본화]

<해답> 1.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20X2.7.1 (차) 건 물 1,050,000 (대) 투자부동산 1,100,000
투자부동산평가손실 50,000
20X2.12.31 (차) 감가상각비 26,250 (대) 감가상각누계액 26,250

● 20X2년 말 감가상각비 = (₩1,050,000 - ₩0) X 1/20 X 6/12 = ₩26,250

<해답> 2. ②

20X3.7.1	(차) 감가상각비	4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5,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25,000	(대) 건물(유형자산)	2,000,000
	투자부동산	2,500,000	재평가잉여금	725,000
20X3.12.31	(차) 투자부동산	500,000	(대) 투자부동산평가이익	500,000

->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45,000) + ₩500,000(투자부동산 평가이익) = ₩455,000 증가

1) AC금융자산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취득시 거래원가 : 가산)
① 매 보고기간 말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당기손익) 인식
② AC금융자산은 중도에 매도하더라도 분류할 수 있음
③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2) FVOCI금융자산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취득시 거래원가 : 가산)
① 매 보고기간 말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당기손익) 인식 & 공정가치로 평가(기타포괄손익)
② FVOCI금융자산 처분시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처분시점의 처분손익(당기손익)은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동일

3) FVPL금융자산 :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취득시 거래원가 : 당기비용)
① 이자수익 : 표시이자로만 인식
②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평가손익(당기손익) = 연도 말 공정가치 - 기초장부금액
③ FVPL금융자산처분손익(당기손익) = 순매각금액 -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 금융자산의 손상

①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기대신용손실모형)
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지분상품은 손상을 적용하지 않음**
③ **기대신용손실의 추정기간**
1)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12개월
2)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신용이 손상,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 등 : 전체기간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총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⑥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 유효이자율

⑦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 ×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⑧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 금융자산 재분류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한다. 재분류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재분류일이란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초래하는 사업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을 말한다. 사업모형을 선택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재분류가 불가능하다.

재분류 전	재분류 후	재분류시 회계처리
AC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FVOCI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음
FVOCI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음
	FVPL 금융자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FV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되며, 이를 기초로 **유효이자율 계산**
	FVOCI 금융자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 계산**

◆ 필수문제

1. 20X1년 1월 1일에 ㈜감평은 ㈜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이자는 매년 말 후급)의 3년 만기 사채를 ₩950,22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었다. 동 사채의 20X1년 말 공정가치는 ₩970,000이었으며, 20X2년 초에 ₩975,000에 처분하였다. ㈜감평의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FVPL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X1년 당기순이익은 ₩99,780 증가한다.
②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X1년 당기순이익은 ₩95,022 증가한다.
③ AC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X1년 당기순이익은 ₩95,022 증가한다.
④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X2년 당기순이익은 ₩5,000 증가한다.
⑤ AC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20X2년 당기순이익은 ₩9,758 증가한다.

2. 20×1년 1월 1일 (주)감평은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4%,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896,884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1년 말 동 사채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25,000이며, 20×2년 초 ₩940,00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의 동 사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년 기출)

①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68,116 증가한다.
②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71,751 증가한다.
④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11,365 증가한다.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15,000 증가한다.

3. 금융상품의 손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보다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이 더 적을 것인데, 두 금액의 차이가 현금부족액이다. 현금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신용손실이라고 하며, 신용손실을 개별 채무불이행의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대신용손실이라고 한다.

②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4. ㈜세무는 20×1년 초 ㈜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4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39,24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세무는 20×1년 말 ㈜한국으로부터 20×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 동 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세무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만기까지 매년 말 이자 ₩70,000과 만기에 원금 ₩7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회계처리가 ㈜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CTA 23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4

① ₩139,247 감소 ② ₩164,447 감소
③ ₩172,854 감소 ④ ₩181,772 감소
⑤ ₩285,597 감소

5.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18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③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④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⑤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6. 다음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재분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CTA 22

ㄱ.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ㄷ.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투자채무상품]

<해답> 1. ④

1) 20X1년 이자수익(유효이자) = ₩950,220 X 10% = ₩95,022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나,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나 이자수익은 동일하다.
2) 20X2년 초 처분이익 ① 20X2년 초 상각후원가 = ₩950,220 + ₩15,022(상각액) = ₩965,242
② 처분이익 = ₩975,000 - ₩965,242 = ₩9,758
3) FVPL 금융자산일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① 표시이자(액면이자) = ₩80,000
② FVPL 금융자산평가이익 = ₩970,000(공정가) - ₩950,220 = ₩19,780
③ 20X1년 당기순이익 증가 = ₩80,000 + ₩19,780 = ₩99,780 증가

<해답> 2. ⑤

1) 20X1년 이자수익(유효이자) = ₩896,884 X 8% = ₩71,751
2) 20X2년 초 처분이익 ① 20X2년 초 상각후원가 = ₩896,884 + ₩31,751(상각액) = ₩928,635
② 처분이익 = ₩940,000 - ₩928,635 = ₩11,365
3) FVPL 금융자산일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① 표시이자(액면이자) = ₩40,000
② FVPL 금융자산평가이익 = ₩925,000(공정가) - ₩896,884 = ₩28,116
③ 20X1년 당기순이익 증가 = ₩40,000 + ₩28,116 = ₩68,116 증가

<해답> 3. 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해답> 4. ③

1) 20×1년 이자수익 = ₩939,240 × 12% = ₩112,709
2) 20×1년 말 상각후원가 = ₩939,240 × 1.12 - ₩100,000 = ₩951,949
3) 20×1년 말 회수가능액 = ₩700,000 × 0.7118 + ₩70,000 × 2.4018 = ₩666,386
4) 20×1년 말 손상차손 = ₩951,949 - ₩666,386 = ₩285,563
5)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12,709(이자수익) - ₩285,563(손상차손) = ₩172,854 감소

<해답> 5. ③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답> 6. ②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대체한다.

테마 9	금융부채	감정평가사 회계학

▶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①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
②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 배당금 지급액은 자본요소에 관련되므로 이익의 배분으로 인식
③ 누적적 상환우선주 : 배당을 포함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상환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 배당금지급액은 부채요소에 관련되므로 이자비용으로 인식

◆ **필수문제**

1. **㈜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3년 만기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한편, ㈜세무가 동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발행비 ₩47,015이 발생하였으며, ㈜민국은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87,564를 인식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8%, 3기간 기간 말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7938이며, 8%, 3기간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는 2.577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또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CTA 17

① ₩91,320 ② ₩92,076
③ ₩93,560 ④ ₩94,070
⑤ ₩95,783

2. **㈜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세무는 20×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CTA 19

① ₩190,906 ② ₩286,359
③ ₩334,086 ④ ₩381,812
⑤ ₩429,539

3. ㈜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200주(1주당 액면금액 ₩500)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은 상환우선주를 20×2년 12월 31일에 1주당 ₩6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은 액면금액기준 연 3%이며, 배당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20×1년 1월 1일 현재 상환우선주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6%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6%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6%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2년	0.8900	1.8334

- 20×1년 말에 ㈜대한은 동 상환우선주의 보유자에게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이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PA 21

① ₩0 ② ₩3,000 ③ ₩3,600 ④ ₩6,408 ⑤ ₩6,738

[금융부채]

<해답> 1. ①

1) 1/1 사채의 현재가치(8%) = ₩1,000,000 × 0.7938 + ₩50,000 × 2.5771 = ₩922,655
2) 1/1 사채발행금액 = ₩922,655 - ₩47,015(사채발행비) = ₩875,640
3) 유효이자율 = ₩87,564(20×1년 이자비용) ÷ ₩875,640(20×1년 초 장부금액) = 10%
4) 20×1년 말 장부금액 = ₩875,640 × 1.1 - ₩50,000 = ₩913,204
5) 20×2년 이자비용 = ₩913,204 × 10% = ₩91,320

<해답> 2. ②

1) 20×1년 12월 31일 장부금액 = ₩875,645 × 1.1 - ₩50,000 = ₩913,210
2) 20×2년 1월 1일 사채 상환시 장부금액
   = ₩637,000 + ₩2,184(사채상환이익) = ₩639,184
   → 상환비율 = ₩639,184 ÷ ₩913,210 = 70%
3)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순액) = [₩913,210 × 1.1 - ₩50,000] × 30% = ₩286,359
   또는 ₩273,963 × 1.1 - ₩15,000 = ₩286,359로도 답변할 수 있다.

<해답> 3. ⑤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우선주이므로 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한다.

1) 20×1년 초 금융부채 장부금액 = ₩120,000 × 0.8900 + ₩3,000 × 1.8334 = ₩112,300
2) 20×1년도 이자비용 = ₩112,300 × 6% = ₩6,738

테마 10	자본	감정평가사 회계학

자본금	① 액면주식 자본금 =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금액 ②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은 이사회에서 결정
유상증자 (실질적 증자)	주식발행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는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
주식배당 (형식적 증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자본금으로 대체)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회계처리 없음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자본금으로 대체) 무상증자를 받은 주주는 회계처리 없음
유상감자 (실질적 감자)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순자산도 감소 →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으로 구분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 →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상계
무상감자 (형식적 감자)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미처리결손금이 감소(순자산 변동은 없음) → 형식적 감자의 경우 감자차손은 발생하지 않음
자본잉여금	① 증자 및 감자활동, 기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으로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구별 ②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무상증자)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 ③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자본조정	① 차감계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② 가산계정: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자기주식 거래	① 자기주식 취득: (차) 자기주식(자본조정 (-)) (대) 현금(자산감소) ② 자기주식 처분: (차) 현금(자산증가) (대)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 처분시 자본 증가,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 ③ 자기주식 공정가평가 :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기말 공정가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④ 자기주식 소각 : 자본총계 불변
이익잉여금	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 ②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에 의한 배당의 최소 10%), 선물거래책임준비금 등 ③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 ④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	회사가 가득한 이익 중 내부로 유보할 부분, 사외로 유출할 부분 등을 결정하고 차기로 이월시킬 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과정 → 처분형태 : 적립, 배당 등 사외유출,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 필수문제

1.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3

① 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②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2. 다음은 ㈜세무의 기초와 기말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구분	기초	기말
자산총계	₩25,865,000	₩27,285,000
부채총계	16,484,000	15,129,000

당기 중에 유상증자 ₩1,200,000이 있었고, 현금배당금 ₩400,000, 주식배당 ₩100,000 및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00,000이 있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CTA 18

① ₩1,075,000 ② ₩2,075,000 ③ ₩2,775,000 ④ ₩1,875,000 ⑤ ₩1,975,000

3. 20×1년 말 ㈜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 · 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 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CTA 17

① ₩5,000,000 ② ₩5,500,000 ③ ₩6,000,000 ④ ₩6,500,000 ⑤ ₩7,000,000

[자본]

<해답> 1. 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해답> 2. ④
1) 기초자본 = ₩25,865,000 - ₩16,484,000 = ₩9,381,000
2) 기말자본 = ₩27,285,000 - ₩15,129,000 = ₩12,156,000
3)기말자본(₩12,156,000)=₩9,381,000(기초자본)+₩1,200,000(유상증자)-₩400,000(현금배당)+₩100,000(기타포괄손익)+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1,875,000

<해답> 3. ④
1) 기말자본 = ₩6,000,000 증가
2) 기말자본(₩6,000,000 증가) =₩500,000(유상증자)-₩800,000(현금배당)-₩600,000(자기주식의 취득)
+₩400,000(기타포괄손익)+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6,500,000

(1) 선도나 콜옵션

기업이 자산을 판매한 후 다시 그 자산을 사야하는 의무가 있거나 그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고객은 당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기업은 자산을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다.**

구분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리스로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금융약정의 경우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2) 풋옵션

재매입약정의 결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할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경제적유인이 유의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권리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임	리스로 회계처리
	권리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 풋옵션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

◆ **필수문제**

1. ㈜감평은 20×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 판매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감평은 20×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22년 기출)

상황	내용
A	20×2년 3월 31일에 ㈜감평이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B	20×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상황 A	상황 B		상황 A	상황 B
①	₩100 감소	₩100 증가	②	₩50 감소	₩100 증가
③	₩50 감소	₩350 증가	④	₩300 증가	₩350 증가
⑤	₩400 증가	₩400 증가			

[재매입약정]

<해답> 1. ③

<상황 A>

20X1.10.1	(차) 현금	1,200	(대) 계약부채	1,200
20X1.12.31	(차) 이자비용	50	(대) 계약부채	50
20X2.3.31	(차) 이자비용	50	(대) 계약부채	50
	(차) 계약부채	1,300	(대) 현금	1,300

<상황 B>

20X1.10.1	(차) 현금	1,200	(대) 계약부채	1,200
20X1.12.31	(차) 이자비용	50	(대) 계약부채	50
20X2.3.31	(차) 이자비용	50	(대) 계약부채	50
	(차) 계약부채	1,300	(대) 매출	1,300
	(차) 매출원가	900	(대) 재고자산	900

테마 12	확정급여채무(기중 퇴직 및 적립) + 순확정급여부채	감정평가사 회계학

1.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퇴사시점과 사외적립자산의 적립시점이 기말인 경우 기초잔액에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2. 단, 퇴사시점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적립 시점이 회계기간 중이라면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잔액을 고려하여 개월수로 구분해서 이자수익, 이자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순확정급여부채 = 기초잔액 + 순이자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출연(적립)
± 보험수리적손익 ± 재측정요소(사외적립자산과 부호는 반대)
= 기말잔액

◆ 필수문제

1. ㈜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9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720,000이다. 20×1년 동안 당기근무원가는 ₩120,000이다. 20×1년 9월 1일 퇴직한 종업원에게 ₩90,000의 퇴직급여가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20×1년 10월 1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60,000을 납부하였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0%이고, 이자원가 및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CTA 20

① ₩240,000 ② ₩256,500 ③ ₩258,000 ④ ₩316,500 ⑤ ₩318,000

2.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900,000이다.
· 20×1년 5월 1일에 퇴직종업원에게 ₩2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9월 1일에 사외적립자산에 ₩12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300,000이다.
·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400,000이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다.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매년 변동이 없다.
· 관련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CPA 22

① ₩300,000 감소 ② ₩280,000 감소 ③ ₩260,000 감소
④ ₩240,000 감소 ⑤ ₩220,000 감소

3. ㈜감평은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이다. 20X1년에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에서 기타포괄손실(재측정요소)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감평이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퇴직급여관련 기타포괄손실은 ₩1,040이다. ㈜감평이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적용한 할인율은 얼마인가? (단, 자산인식상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1) 20X1년 확정급여채무의 당기근무원가는 ₩4,000이다.
(2) 20X1년 말 퇴직한 종업원에게 ₩3,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3)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추가로 ₩2,000을 적립하였다.
(4)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확정급여부채는 ₩5,180이다.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4. ㈜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감평의 20×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90,000이고,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7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7,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3,800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26년 기출)

① ₩40,800　② ₩41,200　③ ₩42,000　④ ₩44,800　⑤ ₩45,200

[확정급여제도]

<해답> 1. ②
1)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 ₩900,000 X 10% X 8/12 + (₩900,000 - ₩90,000) X 10% X 4/12 = ₩87,000
2)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720,000 X 10% X 8/12 + (₩720,000 - ₩90,000) X 10% X 1/12 + (₩720,000 - ₩90,000 + ₩60,000) X 10% X 3/12 = ₩70,500
3)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 장부금액 = ₩900,000(기초잔액) + ₩87,000(이자비용) - ₩90,000(퇴직금지급액) + ₩120,000(당기근무원가) = ₩1,017,000
4)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 ₩720,000(기초잔액) + ₩70,500(이자수익) - ₩90,000(퇴직금지급액) + ₩60,000(기여금 납부액) = ₩760,500
5)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 = ₩1,017,000 - ₩760,500 = ₩256,500

<해답> 2. ①
1)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 ₩1,200,000 X 10% X 4/12 + ₩960,000 X 10% X 8/12 = ₩104,000
2)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900,000 X 10% X 4/12 + ₩660,000 X 10% X 4/12 + ₩780,000 X 10% X 4/12 = ₩78,000
3)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400,000) = ₩1,200,000(기초잔액) + ₩104,000(이자비용) - ₩240,000(퇴직금지급액) + ₩300,000(당기근무원가) + ₩36,000(보험수리적손실)
4)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920,000) = ₩900,000(기초잔액) + ₩78,000(이자수익) - ₩240,000(퇴직금지급액) + ₩120,000(출연금액) + ₩62,000(재측정요소)
5)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04,000(이자비용) + ₩300,000(당기근무원가) - ₩78,000(이자수익) = ₩326,000 감소
6) 20X1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36,000) + ₩62,000 = ₩26,000 증가
7) 20X1년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326,000) + ₩26,000 = ₩300,000 감소

<해답> 3. ②
기말 순확정급여부채(₩5,180) = ₩2,000(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2,000 X 할인율 + ₩4,000(당기근무원가) - ₩2,000(사외적립자산 적립액) + ₩1,040(기타포괄손실)
-> 할인율 = 7%

<해답> 4. ⑤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 = ₩20,000(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2,000(순이자) + ₩90,000(당기근무원가) - ₩70,000(사외적립자산 출연) + ₩7,000(재측정요소 손실) - ₩3,800(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 ₩45,200

테마 13	증분공정가치	감정평가사 회계학

조건변경	①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 : 증분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보상비용으로 추가인식 ②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 :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계속하여 인식

◆ 필수문제

1. ㈜세무는 20×1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300명에게 20×4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임직원 1명당 주식선택권 10개씩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 동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이다. 동 주식선택권은 20×5년 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20×2년 1월 1일 ㈜세무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 증가하였다. ㈜세무는 20×1년 말까지 상기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중 20%가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80%로 추정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향후 2년 내 퇴사율을 10%로 예상함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90%로 추정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무가 20×2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CTA 22

① ₩120,000 ② ₩150,000 ③ ₩168,000 ④ ₩240,000 ⑤ ₩270,000

2. (주)감평은 20×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20×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이며, 주식선택권은 20×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 말 실제 누적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실제 누적 퇴직자 수	추가퇴직 예상자 수
20×1년 말	3명	13명
20×2년 말	7명	12명

(주)감평은 20×2년 초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0 증가하였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26년 기출)

① ₩26,000 ② ₩28,000 ③ ₩32,400 ④ ₩34,100 ⑤ ₩36,800

[주식기준보상]

<해답> 1. ③

1) 20X1년도 주식보상비용 = 300명 X 80% X 10개 X ₩200 X 1/4 = ₩120,000

2) 20X2년도 주식보상비용 = 300명 X 90% X 10개 X ₩200 X 2/4 - ₩120,000(20X1년도 보상비용) + 300명 X 90% X 10개 X ₩20 X 1/3 = ₩168,000

<해답> 2. ④

1) 20X1년 보상비용 = (100명 - 3명 - 13명) X 10개 X ₩100 X 1/3 = ₩28,000

2) 20X2년 보상비용 = (100명 - 7명 - 12명) X 10개 X ₩100 X 2/3 - ₩28,000 + (100명 - 7명 - 12명) X 10개 X ₩20 X 1/2 = ₩34,100

테마 14	법인세	감정평가사 회계학

당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자산	①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당기법인세부채 등)로 인식 ② 과거 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자산(당기법인세자산 등)으로 인식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측정	①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누진세율 하에서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음 ③ 매 보고기간 말에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이후 그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 환입 ④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

◆ 필수문제

1. ㈜관세는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	₩250,000
일시적차이(A)	(20,000)	20,000
일시적차이(B)		(30,000)
과세소득	180,000	240,000
법인세율	25%	20%

위 세무조정 항목 중 20X1년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20X2년도에 반대조정으로 소멸되었으며, 20X2년도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20X3년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의 20X1년 법인세율은 25%이고, 20X2년과 20X3년 이후의 적용세율은 각각 20%와 18%로 20X1년 말에 입법화되었다. ㈜관세의 20X2년도 법인세비용은? ▸관세사 26

① ₩48,000 ② ₩48,400 ③ ₩49,400 ④ ₩50,000 ⑤ ₩53,400

2. ㈜세무의 20×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법인세비용은? ▸CTA 22

-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① ₩94,000 ② ₩110,000 ③ ₩126,000 ④ ₩132,000 ⑤ ₩148,000

[법인세]

<해답> 1. ③

1) 20x1년 말 이연법인세부채 = ₩20,000(일시적차이 A) X 20% = ₩4,000
2) 20X2년 당기법인세 = ₩240,000 X 20% = ₩48,000
3) 20X2년 말 이연법인세부채 = ₩30,000(일시적차이 B) X 18% = ₩5,400
4) 20X2년도 법인세비용

(차) 법인세비용	49,400	(대) 미지급법인세	48,000
		이연법인세부채	1,400

<해답> 2. ③

1) 20×2년 당기법인세 = (₩500,000 - ₩80,000 + ₩130,000) × 20% = ₩110,000
2) 20×2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 ₩160,000 × 20% = ₩32,000
3) 20×2년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126,000	(대) 미지급법인세	110,000
		이연법인세자산	16,000